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정수 의원 외 13명 발의(의안번호 제83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3호

○ 발 의 자 : 이정수 의원 외13명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고물가 및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에 대한 배달수수료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배달플랫폼”,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 조항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 고물가와 민간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배달플랫폼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공배달플랫폼’의 정의 (안 제2조제6호)

- 개정안 요지 : “공공배달플랫폼”의 개념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플랫폼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배달플랫폼”이란 서산시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거나 협력하는 배달 주문 중개시스템을 말한다.

- 검토의견 : 공공배달플랫폼의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을 특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의 정의 (안 제2조제7호)

- 개정안 요지 : 공공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정의하여 배달비 및 장려금 지원의 대상을 정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7.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란 공공배달플랫폼을 매개로 식품과 상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플랫폼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 검토의견 :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을 특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라. 배달비 지원사업 (안 제6조 제1항 제9호)

- 개정안 요지 : 공공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사업

9. (생 략) ②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소상공인의 배달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소상공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책무 및 현행 조례의 경영안정 지원 체계와 부합함

마. 장려금 지원사업 (안 제6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 개정안 요지 :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와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9호를 제11호로 이동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② (생 략)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10.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공공배달플랫폼의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장려금 또는

캐시백등의 사업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사업과 이용자 대상 캐시백·쿠폰등의 사업을 조례 및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음

【참고자료 1: 공공배달앱(땡겨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 2025. 2. 충청남도와 신한은행(공공배달앱 / 땡겨요) 업무협약
추진배경	-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및 폐업률 증가 -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2%~12.5%)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 취약 - 지역 내 자금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성 대두
서산시현황 땡겨요 연계	- 공공배달앱(땡겨요) 도입 및 서산사랑상품권 연계 결제 시스템 구축 완료 - 향후 5개년(2026~2030) 배달 수수료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예정 - 총 사업비: 7억 원(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땡겨요” 기본방향	1. **[수수료 지원]** 직접적인 비용 절감체계 구축 - **수수료 2% 저율 체계 유지**: 민간 배달앱 대비 획기적으로 낮은 수수료 체계를 통해 소상공인 순이익 증대 2. **[소비자 유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통합 플랫폼화 - 집중 프로모션 실시: 명절기간 등 구매한도 증액 및 배달앱 전용 선착순 쿠폰 발행 3. **[가맹점 확대]** 맞춤형 인센티브 및 마케팅 지원 - 가입 초기 진입장벽 제거: 신규 가맹점 대상 앱 설치 교육, 홍보물(스티커, 배너) 제작 지원 - 지역 밀착형 마케팅: 서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점가 입점 점포 대상 특별 마케팅 추진 4. **[지속가능성]** 예산 효율성 확보 및 사후관리 - 성과분석 체계 마련: 매 분기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 매출액, 수수료 절감액 모니터링 - 예산 효율적 집행: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분별한 예산 투입보다는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비 재배정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영업이익 증대 및 경영 위기 극복 - 서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 민관 협력 공공배달 플랫폼 안착으로 배달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참고자료 2: 지자체별 공공배달앱(땡겨요) 적용 사례】

지자체별 사 례	- 서울시 **'서울배달+땡겨요 전용상품권' 발행(15% 할인)** **소비쿠폰 및 결제 페이백 시스템**을 결합하여 소비자 혜택 극대화 - 광주광역시 대규모 **특별 할인 프로모션 추진 및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확대 발행에 예산 집중 투입 - 부산광역시 기존 공공앱 종료 후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입점 수수료 및 월 이용료 무료** 조건으로 재도입 - 울산광역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와 통합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집중 - 충청북도 **입점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건당 지원(최대 30만 원)**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 안동시 앱 내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직접 탑재**하고, **신규 가맹점에 사장님 지원금 (최대 30만 원)** 제공
결 론	*** 소비자가 익숙한 민간 앱을 떠나 공공 배달앱을 쓰게 만드는 유인책이 필요** - 지자체 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계함 * 지자체 정책 = 수수료 (2%) + 상품권 할인(10%) + 소비쿠폰(할인) **- 3중 혜택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

【참고자료 3: 주요 플랫폼별 수수료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명	과 거	2026년 상생방안
배달의민족 (수수료 : 매출액기반 차등적용)	○ **배민배달** : 중개수수료 9.8% +배달비 1.9~2.9천원 ○ **전통시장** : 0%(일부)	○ **배민배달** ➤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 거래액 상위 0~35% : 7.8% + 배달비 2,400~3,400원 - 거래액 중위 35~50% : 6.8% + 배달비 2,100~3,100원 - 거래액 중위 50~80% : 6.8% + 배달비 1,900~2,900원 - 거래액 하위 80~100% : 2.0% + 배달비 1,900~2,900원 ○ **전통시장** : 0%(전국) ○ 향후 **2년간** 시행
쿠팡이츠 (수수료 : 매출액기반 차등적용)	○ **쿠팡배달** : 중개수수료 9.8% +배달비 1.9~2.9천원	○ **쿠팡배달** ➤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 거래액 상위 0~35% : 7.8% + 배달비 2,400~3,400원 - 거래액 중위 35~50% : 6.8% + 배달비 2,100~3,100원 - 거래액 중위 50~80% : 6.8% + 배달비 1,900~2,900원 - 거래액 하위 80~100% : 2.0% + 배달비 1,900~2,900원 ○ 향후 **2년간** 시행
요기요 (수수료 : 주문건수 차등적용)	○ **가게배달** : 중개수수료 12.5% ○ **요기배달** : 중개수수료 12.5% +배달비 1.9~2.9천원 ○ **포장** : 중개수수료 12.5%	○ **가게배달** ➤ **중개수수료** 9.7%('24.9월 旣 시행) ➤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24.10월 시범운영 중) · **1구간 9.7% / 2구간 8.7% / 3구간 7.7% / 4구간 4.7%** *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 ➤ **거래액 하위 40% : 중개수수료 20% 포인트 페이백** ○ **요기배달** ➤ **중개수수료** 9.7%('24.9월 旣 시행) + **배달비** 1,900~2,900원 ➤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24.10월 시범운영 중) · 1구간 9.7% / 2구간 8.7% / 3구간 7.7% / 4구간 4.7% *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 ➤ **거래액 하위 40% : 중개수수료 20% 포인트 페이백** ○ **포장** ➤ **중개수수료 7.7%**('24.9월 旣 시행) ➤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 · 1구간 7.7% / 2구간 6.7% / 3구간 5.7% / 4구간 2.7% ➤ **거래액 하위 40% : 중개수수료 20% 포인트 페이백**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고물가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공공배달플랫폼 이용 활성화 지원과 배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내용과 부합함

다. 최근 민간 배달 플랫폼의 이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배달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방식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